

# 부 산 가 정 법 원

## 판 결

사 건 2016드단12409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 
원 고 고00 (1955년생)  
주소 부산  
송달장소 부산  
등록기준지 부산  
피 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
주소 부산  
변 론 종 결 2016. 12. 7.  
판 결 선 고 2016. 12. 21.

## 주 문

1. 원고와 망 박00(주민등록번호 생략, 등록기준지 전남) 사이에는 2002. 10. 17.부터 2016. 7. 23.까지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.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갑 제1 내지 6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와 망 박00(이하 '망인'이라 한다)은 1980. 9. 27. 혼인신고를 하였고, 그들 사이에 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사실, 원고와 망인은 망인의 채무 문제로 2002. 10. 16. 협의이혼을 한 사실, 그 후 원고의 채무 문제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일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는 있으나 사실은 계속하여 같은 곳에 거주하였고, 망인이 2016. 7. 24. 사망할 때까지 종전과 동일하게 부부로서 생활을 하여온 사실이 인정된다.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, 원고와 망인은 2002. 10. 17.부터 2016. 7. 23.까지 혼인신고만 없었을 뿐 혼인의 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, 원고로서는 제3자와 사이의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 또는 그 해결의 수단으로서 망인과의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.

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호철